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KTOP KOSPI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

	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3→2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4.52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1.53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(K-1 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4 등급 (보통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4 등급 (보통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

	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4→3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7.38%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1.44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(V-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종류 C-PE, C-P2E, I 수익증권 신설
- 종류 S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5. (생략)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5. (현행과 동일) 16.종류 C-P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7.종류 C-P2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18.종류 I 수익증권: 고액거래자용 (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)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1. ~ 15. (생략)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5. (현행과 동일) 16.종류 C-PE 수익증권 17.종류 C-P2E 수익증권 18.종류 I 수익증권

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	③ (생략) [종류 S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7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<신설>	③ (현행과 동일) [종류 S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6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-P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-P2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76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I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9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<table>
<tr>
<td>[요약정보]</td>
<td>투자비용
(생략)

운용전문인력
(생략)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
<신설></td>
<td>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집합투자기구의 종류
<table><tr><td>기타</td><td>고액(I)</td><td>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C-P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C-P2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 I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신설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C-P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C-P2E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 I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종류 C-PE, C-P2E, I 수익증권 신설 - 종류 S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table><tr><td>기타</td><td>고액(I)</td><td>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</table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** (2) 가입대상 <신설>	**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** (2) 가입대상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을 통하여</td></tr>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C-PE</td><td>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</tr>
<tr><td>종류 C-P2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</td></tr>
<tr><td>종류 I</td><td>고액거래자용 (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신설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(생략)

<table>
<tr><th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S</td><td>0.4446</td><td>0.47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0.9726</td></tr>
</table>

<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
<tr><td>S</td><td>100</td><td>205</td><td>315</td><td>552</td><td>1,256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종류형 명칭</th><th>선취/후취판매, 환매수수료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I</td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</td><td>없음</td></tr>
</table>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
<tr><th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S</td><td>0.4446</td><td>0.265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0.7676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종류형 명칭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</th><th>총 보수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0.4446</td><td>0.3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0.8026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0.4446</td><td>0.276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0.7786</td></tr>
<tr><td>I</td><td>0.4446</td><td>0.29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0.7926</td></tr>
</table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
<tr><td>S</td><td>79</td><td>162</td><td>249</td><td>436</td><td>992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신설></td><td>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1 년</th><th>2 년</th><th>3 년</th><th>5 년</th><th>10 년</th></tr>
<tr><td>C-PE</td><td>82</td><td>169</td><td>259</td><td>455</td><td>1,035</td></tr>
<tr><td>C-P2E</td><td>94</td><td>193</td><td>297</td><td>521</td><td>1,186</td></tr>
<tr><td>I</td><td>91</td><td>187</td><td>288</td><td>505</td><td>1,149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위험등급 오기 정정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 위험 등급	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[매우 낮은 위험]	투자 위험 등급 6 등급 [매우 낮은 위험]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 위험 등급	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[매우 낮은 위험]	투자 위험 등급 6 등급 [매우 낮은 위험]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투자위험등급 오기 정정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- 운용전환 후 펀드명칭 추가 기재
- 채권형 전환시 투자자산 한도 및 제한 문구 정정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운용전환 후 책임운용역 기재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펀드명	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	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 [운용전환일 이후] 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채권] *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하여 이하 같음.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"으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 [운용전환일 이후]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채권]"으로 한다.

제 10 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("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"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1.고객의 성명 및 주소 2.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"실질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"수익증권고객계좌부"라 한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1.고객(이하 "투자자"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 2.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(삭제)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
제 11 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)	(생략)	(삭제)
제 12 조(수익증권의 재교부)	(생략)	(삭제)

제 13 조(수익증권의 양도)	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	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 14 조(수익자명부)	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실질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실질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	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수익자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(삭제)

	으로 본다.	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~5 (생략) 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	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운용한다. 1~5 (현행과 같음) 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
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①(생략) <신설> ②~③(생략) <신설>	①(현행과 동일) 6.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날부터 1 월간 ②~③(현행과 동일) ④제 18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이 주식배당, 무상증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.
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	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	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제 26 조(수익	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	④(삭제)

증권의 환매)	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⑥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	⑤(삭제) ⑥(삭제)
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2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	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消却)하여야 한다.	④(삭제)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		1. 보상금액: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48조(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 1.소각	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펀드명	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	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 [운용전환일 이후] 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채권] *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하여 이하 같음.

[요약정보]	**투자목적 및 전략** (생략) 이후 목표수익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전환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채권형으로 전환되어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 **투자비용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 진형보	**투자목적 및 전략** (현행과 동일) 이후 목표수익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종류 A 수익증권의 기준가가 1,100 원 수준에 도달한 영업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 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) **운용전문인력** [운용전환일 전] 책임 : 진형보 [운용전환일 이후] 책임 : 허승찬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펀드명	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	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 [운용전환일 이후] 하나 UBS 변동성포커스분할매매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[채권] * 집합투자기구 명칭 관련하여 이하 같음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

		- 운용전환 후 펀드명칭 추가 기재 - 채권형 전환시 투자자산 한도 및 제한 문구 정정 - 운용전환 후 책임운용역 기재(허승찬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진형보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[운용전환일 전] 책임 : 진형보 [운용전환일 이후] 책임 : 허승찬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** (생략) 이후 목표수익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전환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채권형으로 전환되어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	**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** (현행과 동일) 이후 목표수익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종류 A 수익증권의 기준가가 1,100 원 수준에 도달한 영업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 ⑥ 집합투자증권등 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호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가.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 ⑥ 집합투자증권등: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호

	내지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. 1.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.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.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.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 호 내지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신설>	내지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. 1.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.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.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.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1 호 내지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.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날부터 1 월간 ※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주식배당, 무상증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상기 ①~②의 투자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합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** 가. 투자전략 (1) 기본전략 (생략) - 이후 목표수익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전환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채권형으로 전환되어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 (2)세부운용계획	**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** 가. 투자전략 (1) 기본전략 (현행과 동일) - 이후 목표수익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종류 A 수익증권의 기준가가 1,100 원 수준에 도달한 영업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 (2)세부운용계획

	B. 채권형으로 전환 ③채권형으로의 전환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채권형으로 전환되어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	B. 채권형으로 전환 ③ 종류 A 수익증권의 기준가가 1,100 원 수준에 도달한 영업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까지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6 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환되지 않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다. 기타 제한 사항 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소각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	다. 기타 제한 사항 1)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-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. 1.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.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양도(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)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관한 사항		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(K-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

	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3→2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08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0.35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제 2 호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에 관한 사항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.01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.63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[변경 전 1]	**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[변경 후 1]
제 3 부 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[변경 전 1]

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(2014.1.1.부터)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후 1]

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올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1 월 1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동종유형총보수,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1 월 12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

	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